



KR
KOREAN REGISTER
**TECHNICAL
INFORMATION**

36, Myeongji ocean city 9-ro,
Gangseo-gu, Busan, 618-814,
The Republic of Korea
Phone : + 82-70-8799-8322
Fax : + 82-70-8799-8339
E-mail : convention@krs.co.kr
Date : 30 May 2019
Person in charge : Heo Kang-Yi

NO.2019-ETC-04

제목 : 검사원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하는 검사 (Rev.1)

1. 배경

본 기술정보는 지난 2011-ETC-06(첨부 참조)에 의해 발행된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에 대하여 현장 검사원 및 선주들 간에 이해가 상이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이며 본 지침은 발행 즉시 유효합니다.

2. 현행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은 협약에 의한 정기적 검사(연차, 중간, 정기) 또는 임시 검사와 동시에 시행되어 선급검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 선급은 등록된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서비스를 협약의 정기적 검사 또는 임시 검사와 같은 검사 기간 내에 시행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급에서는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서는 정기적 검사 또는 임시 검사와 같은 검사 기간 내에 시행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1 구멍뚫목 연차 개방검사
- .2 EPIRB의 매 5년 주기 육상시험
- .3 각종 가스 실린더 및 에어실린더에 대한 5년 또는 10년 주기의 수압시험
- .4 방수복에 대한 주기적인 공기압 시험

그런데, 일부 검사원들이 강제 규정에 의해 전문공급자에 의한 점검서비스가 요구되지 않는 항목(예를 들어, 휴대식 소화기의 연차점검)이지만, 선주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전문공급자의 점검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검사기간 내에 검사원과 동행하여 시행하도록 선사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명확화가 필요한 부분

본선의 선상에서 검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검사 항목들은 전문공급자에 의해 점검서비스가 이뤄질 경우 검사원의 입회가 필요하지만, 휴대식 및 고정식 소화장치, EEBD, SCBA 등의 소화설비들은 전문공급자에 의해 반드시 점검받아야 하는 항목이 아니며 MSC.1/Circ.1432 및 MSC.1/Circ.1516에 근거하여 자격을 갖춘 본선 선원에 의해서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또한, 선

상에서 반드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항목이 육상에서 전문공급자에 의해 검사될 경우 (예를 들어, 휴대식 소화기, EEED, SCBA 등을 육상업체에 하역하여 서비스를 받는 경우), 이러한 검사는 반드시 검사기간 내에 검사원 입회하에 이뤄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선주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전문공급자에 의해 점검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검사원이 해당 설비의 성능에 의문을 제기하여 시험을 요구할 시, 선사는 본선 선원을 통해 또는 선원이 그러한 시험을 실행하여 보여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공급자를 통해 검사원에게 해당 항목이 정상 작동함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협 약 본 부 장



배부처 : 선주 및 선박관리자, 검사원

Disclaimer :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